

의안 검토 보고

의안 번호	제 226 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1. 10. 18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문화재보호를 위한 문화재등록 제도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,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정문화재 이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(50%)하는 규정 신설(안 제8조)

2. 검토결과

- 동 조례안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대상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등록한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

-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. (안 제8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를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,
- 감면율은 50% 범위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구세 감면조례개정표준조례안이 시달(행정자치부 세제13400-186, 2001. 7. 26호, 서울시 세정13400-796, 2001. 8. 3) 되었으며,
- 2001. 9. 5부터 9. 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.
- 동 조례안은 현행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3. 참고자료

□ 관계법령

- 지방세법 제9조
- 문화재보호법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42조

[관계법령]

< 지방세법 >

제9조 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 [개정 78·12·6, 98·12·31]

< 문화재보호법 >

제4조 (보물·국보의 지정)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89·12·30, 93·3·6, 99·1·29, 99·5·24]

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89·12·30, 93·3·6, 99·1·29, 99·5·24]

제6조 (사적·명승·천연기념물의 지정)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·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89·12·30, 93·3·6, 99·1·29, 99·5·24]

제7조 (중요민속자료의 지정)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89·12·30, 93·3·6, 99·1·29, 99·5·24]

제8조 (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 ①문화재청장은 제4조·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[개정 89·12·30, 93·3·6, 99·1·29, 99·5·24, 2000·1·12]

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 [신설 2000·1·12]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신설 2000·1·12]

제42조 (문화재의 등록)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(이하 "등록문화재"라 한다)의 등록기준·절차 및 등록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1·3·28]

[[시행일 2001·7·1]]